



특허를 조기에 보호하는 방법



정지원 (특허청 전기사무관)

I. 서론

최근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에서 중소기업의 K사장은 바람을 붙여넣는 투명소파를 착안해 처음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은 자신이며 판매회사측에서 모방해 유사품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로써는 특허가 공시될 때를 기다려 이의신청을 하는 도리밖에 없다며 제품을 बे긴 회사가 10여 개나 돼 대응을 포기한 채 영업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가 공시되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기사내용만을 보면 K사장은 본인이 개발했지만 특허출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 경우에 K사장은 선사용권을 가질 수는 있으나 특허를 받을 권리는 상실해 버린 것이다.

물론 모방해서 유사품을 내놓은 판매회사는 출원전 공지된 기

술에 의해 특허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K사장의 경우와 같이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을 하여도 등록까지 26~7개월 걸리는데 이보다 더 빨리 특허권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한다. 작년 5월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실은 바 있으나 그동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일부 제도의 구체내용이 바뀌었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로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정되고 새로 시행된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II. 특허의 조기 보호

출원한 특허를 조기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기공개제도와 우

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미리 등록할 수도 있다. 먼저 조기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우선심사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소개하기로 한다.

1. 조기공개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 조기공개외 취지

출원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출원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해

야 출원공개를 하므로 기왕에 출원공개 효과 인정해서 출원인에게 일정한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일로부터 경과하기 전에라도 출원인의 희망에 의해서 조기에 공개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나. 조기공개에 따른 효과

1) 공개의 효과

출원발명을 조기에 공개시킴으로써 그 기술분야의 기술축진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보제공의 기회를 조기에 인정함으로써 업계의 불안정한 상태의 기간을 단축시켜 해당분야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2) 보상금청구권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 공개된 출원발명을 제3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출원인이 그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를 할 경우에는 그 경고후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가

출원공개된 것을 알고 있으면 업으로서 실시한 날로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때에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개의 따르는 효과와 같다.

3) 우선심사신청

다른 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심사신청대상 출원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우선심사신청시 심사청구가 되어 있고, 출원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기공개된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2. 우선심사

우선심사제도라는 것은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특허법 제61조)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으나 심사청구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

다보면 국익이나 개인의 권익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출원공개된 특허발명을 권한없이 업으로 실시하는 제3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한 점, 국익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의 권리화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허청에서는 그 동안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으로 한정하여 우선심사를 허용해 온 공해방지분야의 출원중 신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거나 산업화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 등에 대하여 긴급처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우선심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특허청고시(우선심사사무 취급규정)를 개정하였다.

고시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긴급처리 필요성의 판단기준을 '우선심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 엄격히 적용하여 공해방지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되어온 출원인의 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 되는 출원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가 된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출원(단, 의장에 관한 신청은 심사청구가



없어도 된다)으로써 다음의 사항들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는 것이다.

1) 제3자 실시출원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공개된 특허출원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며 이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특허를 출원한 사람과 공개된 출원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긴급을 요하는 특허출원

긴급을 요하는 특허출원으로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 대상 출원은 다음과 같다.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

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공해방지분야 출원의 요건은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공해방지 및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방법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진동 방지시설·방음시설 및 방진시설
-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및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
-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 (6)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유처리시설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둘째, 상기 요건과 동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일 것
 -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일 것
 - (3)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출원일 것
 - (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써 외국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일 것
-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수출실적, 신용장 내도 및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이 필요하다고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된 출원을 말한다.
-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

나. 우선심사의 신청

1) 신청서

출원공개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경우에 우선심사신청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며 제3자 실시와 긴급을 요하는 출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제3자 실시의 경우

출원공개된 발명을 제3자가 업으로써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신청설명서를 첨부한다.

- 가) 실시상황 : 출원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한 것이라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그 근거가 되는 서류(예를 들면 사진·카달로그 등) 또는 물건 등을 첨부한다.
- 나) 실시 등에 의한 영향 : 제3자의 출원발명의 실시가 출원인에게 어떠한 영향(경제상 또는 신용상)을 미치는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협의의 경우 :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와 과거 어떤 형태로든 실시에 관한 협이가 있었다면 그 입증자료의 첨부와 함께 신청설명서에 기재한다.

라) 제3자의 신청 : 출원인이 아닌 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되는 신청설명서에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등록사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를 기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간행물 등) 또는 물건 등을 첨부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출원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출원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설명서를 첨부한다.

가) 출원의 요지 : 우선심사대상여부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출원 발명의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즉 해당 출원발명이 긴급을 요하는 출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나) 우선심사신청의 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분야, 공해방지분야, 수출촉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이라해서 모두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우선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합당해야 해당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신청서에는 우선심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재한다.

다) 긴급처리의 필요성 : 해당 출원이 긴급히 권리화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기재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 중 수출촉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원일 경우에는 그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 신용장 내도 및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 등이 있

<표 1> 주요국가의 우선심사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
우선심사대상	· 제3자 실시 · 공해방지 · 수출촉진 · 방위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출원	· 제3자 실시 · 제3자가 출원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실시에 견제, 방해가 되는 경우	· 정부기관요청시 · 사업화경우 · 침해품존재 · 출원인의 건강, 나이 · 환경, 에너지개선편면 · DNA 재생과 관련	제한없음
신청시기	출원공개, 심사청구후	출원공개, 심사청구후	출원이후	출원이후
연도별 평균 신청건수	58건	15건	-	223건
권리	특허·실용신안·의장	특허	특허	특허



음을 기재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한다.

공해방지분야에 있어서는 NT마크나 EM마크를 획득한 것을 입증한 서류 혹은 벤처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후 우선권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4) 대리인

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다만, 해당 특허출원시에 우선심사신청을 위임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5) 신청서의 보완

우선심사의 신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1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 당해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청서는 각하됨을 명심한다.

다. 우선심사의 결정

1) 심사국에의 이송

우선심사신청서는 특허청 내

의 관리국 출원과에서 접수하여 심사2국 심사조정과(의장의 경우 심사기준과)는 모든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갖추어 졌다고 판단되면 당해 출원발명의 기술분류를 파악하고 즉시 해당 심사국(의장의 경우 심사담당관실)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담당 심사국에서는 필요시 관계기관 및 우선심사심의협회의 의견문의 및 심의를 통하여 우선심사 적격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서 처리한다.

담당 심사국이 우선심사신청을 처리해야 할 기간은 위의 관계기관 및 우선심사심의협회의 의견문의기간은 제외하고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실제 담당 심사관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14일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2)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당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별로 구분되는 담당 심사국에 이송된 우선심사신청의 출원은 우선신청상황의 적부를 판단하여 신청의 각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심사국의 결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견문의와 우선심사협의회에 우선심사여부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우선심사신청이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㉔ 우선심사의 신청이 되지 않거나, 신청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 ㉕ 출원인과 실시자가 실시의 허락 등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경우
- ㉖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가 현저하게 미비한 경우
- ㉗ 보완서류를 정하여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㉘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할 경우의

<표 2> 연도별 · 우선심사대상별 우선심사 신청건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94	'95	'96	'97	'98	계
제3차 실시	9	11	11	44	45	120
공해방지	25	17	38	42	33	155
수출촉진	8	8	8	3	6	33
정부발명	-	-	-	3	12	15
방위산업	1	-	-	2	1	4
대상 외	-	-	-	-	2	2
계	43	36	57	94	99	429

착수예정시기가 심사조정과 (의장의 경우 심사기준과)로부터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의장의 경우 2월이내)인 경우

그러면 이와같은 이유로 우선 심사신청이 각하되었을 때 우선 심사신청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특허청은 기본적인 시각이 각하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심사착수를 어떻게 하지 않고 신청서로 한 이유도 청구서로 하면 청구하는 권리로 인정된 것으로 우선심사 여부 결정이 행정처분이라고 오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97년 11월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선심사에 대한 각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써 행정불복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였고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같이 특허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우선심사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 재신청을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나) 우선심사의 통보

해당심사국에서 우선심사신청 출원이 적격한 대상출원이라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착수함에 동시에 신청인과 심사조정과에 통보하며, 우선심사대상출원이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도 그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신청인과 심사조정과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3) 우선심사에 따른 등록사정

담당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한 때에는 통상의 심사처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고 하나 적어도 법정 보정기간인 1년3월 이내에는 등록사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출원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한 결과, 등록사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1월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위의 지배적 견해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법에서 1년3월이내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한 쪽만을 바라보는 듯하다.

이유로써는 첫째,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이고 둘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가 있고 이에 따른 의견, 보정의 기회가 주어져 보정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년3월이내에 등록사정을 해주지 않아서 자진보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익과 자진보정의 기회는 사라지더라도 1년3월이내에 등록사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 후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3. 실용신안으로 미리 등록

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란?

1999년 7월 1일부터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 방식심사와 기초적인 요건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단축되어 가고 있는 실용신안의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개발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특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사주의를 고수 하되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선등록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1)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종으로 출원할 수 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시행 이전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 출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특허로 출원중인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데 만일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은 후 나중에 특허등록을 받으려 하는 경우 양자를 택일해야 한다.



2) 형식심사를 거친다.

출원을 하게 되면 형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형식심사는 크게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로 구분된다.

방식심사에서는,

- ① 행위능력
- ②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 ③ 법령에 정한 방식
- ④ 수수료 납부 및
- ⑤ 최초 1년분 등록료 납부 등을 심사한다.

기초적 요건심사에서는

- ① 실용신안 보호대상,
- ② 불등록고안,
- ③ 청구범위 기재방법
- ④ 출원의 단일성 및
- ⑤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지 등을 심사한다.

이처럼 기초적 요건심사를 행하는 취지는 신규성, 진보성 등과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조기에 등록됨에 따른 최소한의 불합리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다.

3) 등록 후 기술평가를 받아 권리를 행사한다.

선등록에 의해 등록받은 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자기 권리를 실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다른 사람을 침해혐의로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그 결과로서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물론 기술평가의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때에는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이 때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단축

선등록제도를 적용받는 출원의 권리 존속기간은 현행 '출원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 및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5) 현재 출원되어 있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한 경과 규정

1999년 7월 1일 현재 기존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기존 규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등록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즉 1993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되어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론

출원중에 있는 특허를 권한없이 제3자가 실시함으로써 인한 손실을 막고 국민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제3자가 모방하기 쉽고 외국에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함과 동시에 조기공개를 신청함이 바람직하고 제3자가 권한없이 실시하거나 공해방지 출원, 수출촉진 관련 출원, 방위산업분야 출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의 직무관련 출원인 경우 우선 심사를 신청함이 유리하다.

특히 공해방지 분야에 대하여는 자기 실시나 국내출원 후 우선권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발명의욕고취에 특허청이 앞장서고 있다.

차제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자기 실시나 국내출원 후 우선권 주장하여 외국에 한 출원을 공해방지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TRIPS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